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구미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 지원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법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확충으로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용어 정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5조)

- 조례의 용어 정의와 기본원칙
- 시장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10조)

-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재정 및 경영, 홍보, 우선구매 등 지원
- 사회적경제 교육·홍보

다.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20조)

3. 조 례 안 : 붙임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 및 주민복지과와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구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침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가치”란 경제, 돌봄, 교육, 문화,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화폐적·비화폐적 자원의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등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란 사회적경제기업 당사자들이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를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진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육성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와 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 및 보호·육성사업
2.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사업
4.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사업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에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할 수 있다.

제8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구매계획·목표·실적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9조(민간 참여 확대) 시장은 민간기업, 단체, 대학 등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연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과의 교류·협력 활동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과 교류·협력하는 민간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교육·홍보)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2.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3.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홍보 사업
4. 사회적경제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홍보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구미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와 유관 기관,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제통상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나.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다.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한 경우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전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 소속 공무원과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2조(표창)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2018 마을기업 육성지침」

운영체계 및 기관별 역할(기초자치단체)

1. 마을기업 신청 법인 대상 적격 검토, 시·도에 추천
2. 지정된 법인과 마을기업 지원 약정 체결
3. 마을기업에 대한 사업비 지급 및 관리, 부정수급 등 감독
4. 사업추진 관리카드 작성 및 현장점검
5. 마을기업 사업 추진실적 분석 및 시·도에 제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과 교육·홍보 사업에 따른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안 제7조, 제10조)
-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위원 수당 지급에 따른 세출 발생(안 제11조~제20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정지원 교육·홍보 사업은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할 사항으로 예산의 소요는 예정되나 재정의 추계는 어려움
- 사회적경제위원회 운영수당 지급 등을 위한 세출예산이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내 용	산출내역	금액
사회적경제위원회	100,000원×10명×1회	1,000

※위원회 수당 산출근거 : 70,000(기본) + 30,000원(2시간이상 초과)

4. 작성자

- 노동복지과 지방행정주사보 배 영 아 (054-480-6232)

소관 실 · 과		노동복지과
입 안 자	과 장	최 현 도
	담 당	유 태 란
	담 당 자	배 영 아 (480-6232)